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!

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김 용 석 의원 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

□ 서울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하여 본 조례에 따라 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의 진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
□ 본 조례가 시행된 2014년부터 변동 없이 월 30만원이 지원되고 있어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, 진료비 지원으로 되어있어 고령인 피해여성근로자들이 직접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.

□ 이에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

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활용의 폭을 확대하고,

진료비 영수증 제출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

이를 건강관리비 지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

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

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